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8474

제안연월일 : 2025. 2.

제 안 자: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 번호	발의·제출자	발와제출일	심사경과	
대중문화 예술산업 발전법 일부 개정법률안	2200488	김승수의원 등 10인	'24.6.14.	상정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4.8.26.)
				소위 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5.1.16.)
	2201465	김윤덕의원 등 13인	'24.7.8.	상정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4.8.26.)
				소위 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5.1.16.)
	2205341	정 부	'24.11.7.	상정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5.1.10.)
				소위 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5.1.16.)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1. 21.)는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

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에 따르면 체납에 따른 간접강제수단 적용이 어려워 과징금 체납 시 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징수수단이 충분하지 않으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와 지방행정제재부과 금법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간 징수수단이 상이하여 업무상 혼돈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 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일관된 체납징수수 단 활용을 통한 행정제재금의 부과 목적을 실현하고 징수율을 제고하 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한편,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가수·연기 자와 연습생에 대한 표준계약서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K-POP, 트로트 음악, 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가운데, 해당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일반인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식비·교통비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열악한 처우가 계속되고 있음. 일반인 출연자 뿐만아니라 영화·드라마 등의 보조출연자의 열악한 처우 역시 계속하여문제제기가 이루어지는 등 대중문화예술용역 현장에 대한 제도적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실태조사의 내용에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하고,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하는 경우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등).

그 외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독립한 사무소를 갖추지 않더 라도 공동사용을 통해 사무소를 갖춘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 으로써 영업 진입에 드는 비용과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 2항).

법률 제 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0492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3항 중 "한다"를 "하고, 제18조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대중문화예술산업 및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를 "대중문화예술산업,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및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무소

제34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를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법률 제20492호 대중문화예술산 법률 제20492호 대중문화예술산 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 제8조(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 산) ① • ② (생 략) 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 (3) -----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관련 사 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 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하고, 제 18조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 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 제18조(실태조사) ① -----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산업 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 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및 대 -----대중문화예술산업,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및 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여야 한다.

- ②・③ (생략)
-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 록) ① (생 략)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생략)
 - 2. 독립한 사무소
 - ③ ~ ⑥ (생 략)
- 제34조(과징금 부과) ①·② (생략)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 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u>국</u> 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
록) ① (현행과 같음)
2
<u>.</u>
1. (현행과 같음)
<u>2. 사무소</u>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4조(과징금 부과) ①・② (현
행과 같음)
3
<u>국</u>
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
<u>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u>

관한 법률 | 에-----

④ (현행과 같음)